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공고 제2026 - 19호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의장

1. 제안이유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에 맞추어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공무국외출장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 구성의 주민대표성 강화 (안 제4조)

나. 의원 임기만료 1년 이내 공무국외출장 제한 기준 마련 (안 제11조제2항)

다. 모든 징계·환수 처분 의원에 대해 2년 이내 출장 제한 의무화(안 제11조제4항)

라. 위법·부당한 출장 판단시 감사기구 등에 감사·조사 의뢰 의무화(안 제12조제5항)

마. 의회 소속 직원 보호 규정 신설(안 제1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참조 : 의회사무국장,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55, 전화 : 02)3425-7388, FAX : 02)3425-7292, E-mail : tnk10@gangdong.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